
현대증권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(외국인 用-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)

※ 본 내용은 기존 KB 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와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KB 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
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

- (1) 현대증권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비거주자의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 금융지주 주식의 1 주당 35,474 원이며, 외국법인의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 금융지주 주식의 1 주당 주식교환일의 종가임.
- (3) 양도가액의 11%(지방소득세 포함)와 양도차익의 22%(지방소득세 포함) 중 적은 금액(양도차익의 22%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)은 한국 내에서 소득세(비거주자 개인의 경우) 및 법인세(외국법인의 경우)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(4)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.
 - 1)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(Custodian Bank)을 통해서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KB 금융지주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. 다만, 실무상 상임대리인과 협의하여 상임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.

- 2) 만약 주주님께서 증권사(금융투자업자)를 통해서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.
- (5)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(KB 금융지주, 상임대리인 등)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(거주자증명서 첨부)를 소득지급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현대증권 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양도가액의 0.5%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, 주당 양도가액이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말합니다.
- (2)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(Custodian Bank)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KB 금융지주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(원천징수)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.
- (3) 만약 증권사(금융투자업자)를 통해서 본 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(원천징수)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II. 유의사항

1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2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,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588-6611(현대증권 스마트고객센터)로 문의 바랍니다.